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서-참조5)

2021. 7. 19.(월) 10:00

본 회의 장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 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임금 심의 기구를 기존 노사민정협의회
에서 노동권익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관련 수수료를 법령에 따라 조정하고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2013. 11. 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교육 관련 민원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III」 건의
과제에 따른 조항 정비,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규제조항 개선, 지자체 실정에 맞춰
종량제봉투 환급 및 감면용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안광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관련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제2항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부료와 사용료의 연간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를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중량 2.5톤 제한을 없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 조항을 없애 특정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조기

이행하도록 유도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증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증을 위한 지원 조례」 의 일부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 계획)에 저촉(위반)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7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1년 4월 26일에 개소한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2021년 10월 19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성남시 울동생태학습원」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입주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고, 퇴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2항제4호 중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을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중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2020.10.16.)에서 의결한 회원 자격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남용삼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 관리계획, 권장시설, 주민협의회, 문화지구의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성남시 소재 문화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문화도시로의 성장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선행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재논의 하기 위해 “부 결” 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한선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개정된 「모자보건법」 내용을 반영하고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신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명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1항을 같은조 본문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용 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2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과

관계법령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 첫번째, 강현숙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에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해당학교 교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제2호, 나목, 10) 중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해당 학교 교직원”을

“학교 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사업주체는 조합설립 당시 동의율이 미충족된 궁전
상가에 대해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라 궁전상가 토지 제척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호 근